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

(10時 17分 散會)

## ○出席議員(26人)

金 元 泰	曹 熙 太	宋 潤 錫
金 星 煥	朴 烊 緒	李 天 握
李 鐘 萬	李 奉 衡	具 又 石
金 鍾 烈	沈 載 祥	洪 性 煥
俞 南 烈	金 汶 泰	李 宗 一
鄭 然 宇	李 康 泌	金 東 嘴
蔡 雲 錫	尹 東 鉉	洪 吉 枝
李 仁 求	尹 正 鑄	金 裕 顯
尹 明 奎	權 五 範	

## ○出席公務員

區 廳 長	曹 三 變
副 區 廳 長	金 玄 宗
總 務 局 長	河 永 基
財 務 局 長	文 忠 實
市 民 局 長	尹 丙 汝
都 市 整 備 局 長	林 東 南
保 健 所 長	金 永 浩
總 務 課 長	李 春 基
企 劃 豫 算 課 長	李 殷 圭

##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실 사 보 고 서

1994. 12. 22.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6회의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94. 12. 22.)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최영명

## 가. 제출이유

물품매입요구 절차를 보완하고 불용 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을 상향조정하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불필요한 장부를 삭제하는등 조례를 보완, 정비 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물품매입요구심사 없는 물품의 매입 금지(안 제8조제2항)
-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을 장부상 취득가액 5백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안 제16조제4항)
- 물품출납원의 비치, 관리하여 할 장부중 소모품대장 삭제(안 제23조제1항제4호)
-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중 비품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안 제4조관련, 별표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건재)

○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물품매입요구심사 없는 물품의 매입을 금지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기준중 비품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인 물품에서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였음.

○ 동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매2년마다 각 지방단체장이 '94. 6. 30일 현재로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시, 도 공동 전의사항을 내무부

에서 검토하여 개선 조치한 사항으로 물품구입요구 절차를 보완하는등 동조례의 미흡하였던 사항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유남렬 위원) : 감정평가는 어디서 하며 취득가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모든 물품을 제외할 의도 아닌가?
- 답변(재무과장 최영명) :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며 모든 물품을 제외시킬 의도는 아니며 금년 재물조사결과 전의사항에 대한 내무부의 개선조치 검토사항임.
- 질의(김유현 위원장) : 금년중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한 경우가 있는가?
- 답변(재무과장 최영명) : 84년식 코란도 차량1대로서 감정가액 250만원을 260만 원에 매각하였고 감정비용은 56,000원임.
- 질의(황태식 위원) : 감정평가 없는 매각절차는?
- 답변(재무과장 최영명)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견적가액에 의하여 매각함.

####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자 : 김성환 위원
- 나. 수정이유 : 안 제16조제4항중 단서조항은 물품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코자 함.
- 다. 수정주요골자
  - 현행대로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을 장부상 취득가액 5백만원으로 수정(안 제16조제4항중 단서조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94. 12. 22.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16조제4항 중 단서조항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수정코자 함.

####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을 현행대로 수정

####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액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  
번  
호

352

제출일자 : 1994. 11. 19

제출자 : 마포구 청장

## 1. 개정이유

물품매입요구절차를 보완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대상을 상향조정 하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불필요한 장부를 삭제하는등 동 조례의 미흡하였던 사항을 보완·점비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물품매입요구 심사 없는 물품의 매입 금지(안 제8조제2항)
-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을 장부상 취득가액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16조제4호)
- 물품출납원이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중 소모품대장 삭제(안 제23조제1항 제4호)
- 물품의 품종 구분기준중 비품을 취득 단가 5만원이상인 물품에서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안 제4조관련, 별표1)

##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제15조
- 지방자치법(1991. 12. 31. 법률 제4466호)제90조 내지 제104조의3
- 지방재정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제108조 내지 제130조의3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불필요

##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물품매입요구의심사) ①주관과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2조 및 제113조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7조에 의한 요구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의2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액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제17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각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

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영”이라 한다.

제32조본문중 “제32조”를 “제30조”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물품취득, 보관 사용등에관한 사항을 규정 하므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 .....
제 2 조(관리책임) ① <u>구청장</u> 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u>구청장</u> 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u>물품관리책임공무원</u> (이하 “ <u>물품출납원</u>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u>물품출납원</u> 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조(관리책임)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②..... ..... ..... <u>물품관리책임공무원</u> (이하 “ <u>물품출납원</u> ”이라 한다)을..... ..... ③..... <u>물품출납원</u> (분임물품출납원을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⑤~⑧(생략)	⑤~⑧.(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u>제17조제1항</u>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u>제16조제1항</u> .....
②~③.(생략)	..... ..... .....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u>제22조</u> 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제21조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1. (현행과 같음)
3. 물품카드 등록	2. (현행과 같음)
4. 소모품대장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도서대장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각자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라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 .....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 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 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 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 조..... ..... ..... ..... ..... ②(현행과 같음)
제32조(타직원에의한인계) 물품출납원이 사 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 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 정한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 ..... .....제30조 .....
(신설)  <별표 1>  <u>물품의 품종·상태구분</u>	<u>제3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u>물품의 품종·상태구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분류(생략)</li> <li>○ 품종 구분 기준</li> </ul> <p>(1) 비품</p> <p>① (생략)</p> <p>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 가 <u>5만원</u> 이상의 물품</p> <p>③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상태 분류기준(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분류(현행과 같음)</li> <li>○ 품종 구분 기준</li> </ul> <p>(1) 비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0만원</u>.....</p> <p>③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상태 분류기준(현행과 같음)</li> </ul>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2. 22.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6회의회(정기회) 제8차위

원회('94. 12. 22.)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문 엽 승

### 가. 제출이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  
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현행의 각개별